

소통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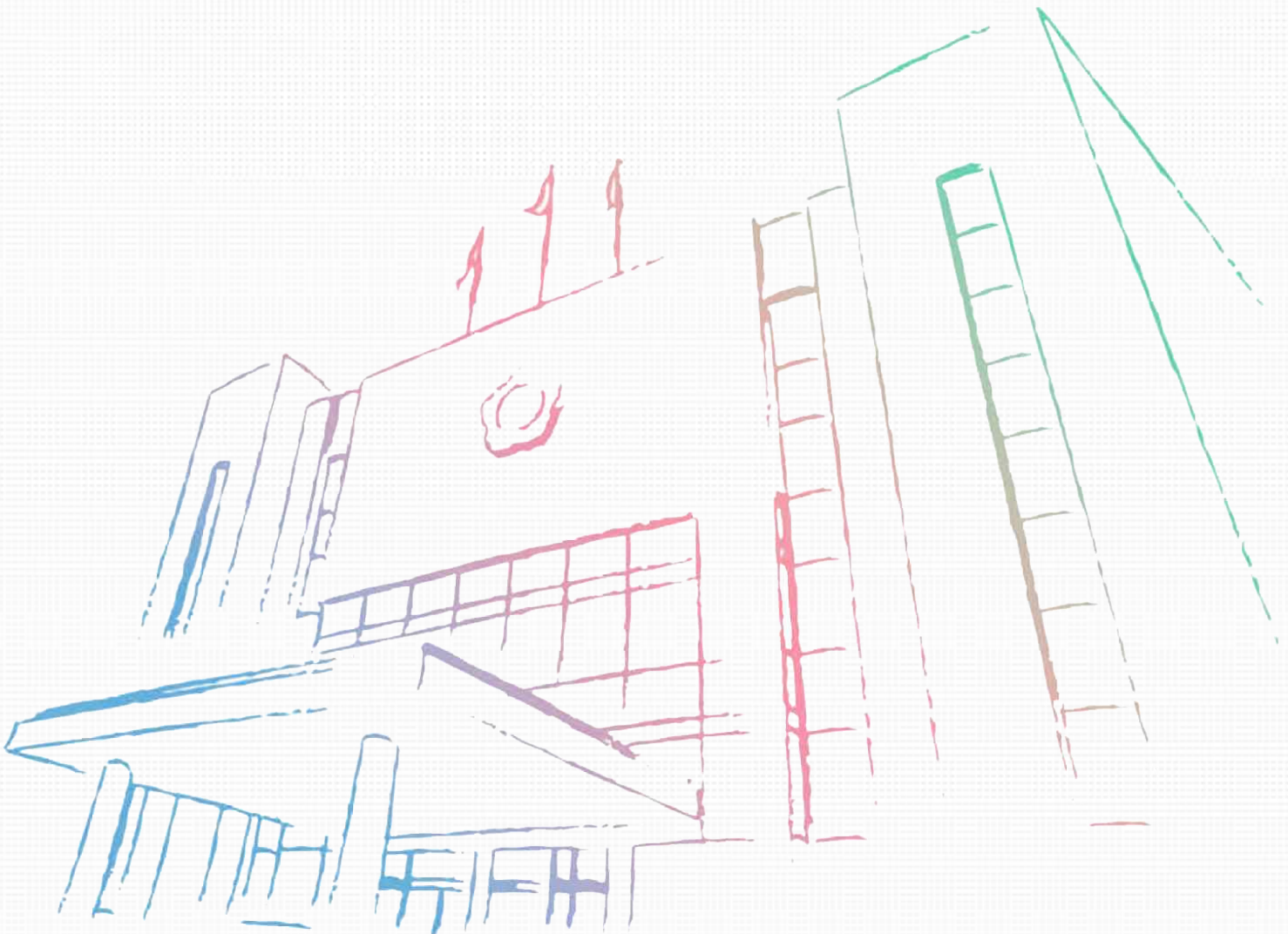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입법정보

2025년 11월





# 목차

##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지방재정법(개정) .....	2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 .....	4
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개정) .....	6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9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 .....	12

##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16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 .....	17
3.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	18
4. 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	19
5.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	20
6. 진주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1

##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1. 도서관 이용자나 주민이 시립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특정 자료가 역사를 왜곡하는 자료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역사를 왜곡하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해당 자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료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군포시) .....	23
2. 영월군수가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교통비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7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로서 입주민 및 일반 주민의 보행에 이용되는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용인시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	31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의 증설 없이 저장설비를 교체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남도 창원시) .....	36

---

## **IV** 국외 입법례

---

1.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 .....	41
-----------------------------	----

---

# 1. 법령 제정·개정 동향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재정법

[시행 2025.11. 11.] [법률 제21086호, 2025. 11. 11.,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086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57호, 2025. 5. 27.,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 단계에서부터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 개정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인구감소지역에"를 "인구감소지역등에"로 하고, 같은 조 중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인구감소지역에"를 각각 "인구감소지역등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60호, 2025. 5. 27.,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계획의 수립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 단계에서부터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960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4조 중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한다.

제34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는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군·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는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로 보며,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생활권 설정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기본계획"은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시·군·구기본계획"은 "시·군·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보며,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로,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1. 4.] [대통령령 제35841호, 2025. 11. 4.,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공간의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로 농업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차별화된 재배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을 집약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를 조성·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인 "특성화농업지구"를 추가하고, 그 지정기준을 농산물 품목의 특성, 농지 규모화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에서 집약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 농산물의 유통·가공·처리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5841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농촌특화지구의 종류)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농업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차별화된 재배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별표 1에서 같다)을 집약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를 조성·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하 "특성화 농업지구"라 한다)를 말한다.

별표 1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조의2에 따른 특성화농업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나. 농업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차별화된 재배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 중 1)의 농산물 품목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2)의 농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에서 집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일 것

1) 농산물 품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농산물 품목

나) 가) 외의 농산물 품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배방식의 경우로 한정한다)

## 2) 농지 기준

가) 둘 이상의 필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접한 농지일 것

나) 농산물 품목의 특성, 농지 규모화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일 것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 및 농기자재의 사용 등에 있어서 주변의 농산물 생산지역과 구분하여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일 것

라. 농산물(해당 지구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한정한다)의 유통·가공·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1. 24.] [교육부령 제369호, 2025. 11. 24.,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가 있는 가구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형제자매 중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이용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이용 신청자 명부 열람조치 의무를 없애며, 지역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5년의 위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개정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24일

교육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 중 "명부"를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9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모의 다른 자녀인 영유아

별표 1 제3호가목4)아)②(i)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목 4)아)②(ii) 본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목 4)아)②(ii)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로 하고, 같은 목 4)아)②(iii)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로 하며, 같은 목 4)아)③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목 4)차)⑦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 대상물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8의2 제1호다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8의3 제1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모의 다른 자녀인 영유아

별표 8의3 제2호가목 중 "파목까지 및 너목"을 "파목까지, 너목 및 더목"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2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탁계약(재위탁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1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5. 11. 7.]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928호, 2025. 11. 7., 제정]

### □ 제정이유

- 강북구 학생 및 학부모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미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임.

### □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나. 미래교육 지원대상 (안 제4조)
- 다. 미래교육 활성화 사업 (안 제5조)
- 라. 미래교육지원센터 (안 제6조 ~ 제7조)
- 마. 미래교육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 □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 □ 시·도별 현황

- 대전

## 2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

[시행 2025. 11. 7.]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692호, 2025. 11. 7., 제정]

### □ 제정이유

- 온라인을 활용한 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배달앱의 운영 및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하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구민의 합리적 소비를 촉진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추진 사업, 재정지원(안 제3조~제5조)
- 다. 협약 및 협력, 운영의 투명성 확보(안 제6조~제7조)

### □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지방자치법」

### □ 시·도별 현황

- 남양주

##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시행 2025. 11. 14.]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265호, 2025. 11. 14., 제정]

### □ 제정이유

- 농어업·농어촌의 고령화 및 소멸위기 등에 대응하여 김포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기본권 보장 등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 김포시장의 책무 등(안 제2조 ~ 안 제3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라. 지급대상, 지급신청 등(안 제5조 ~ 안 제6조)
- 마.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0조)
- 바.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11조)
- 사.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의 폐지(부칙 안 제2조)

###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 □ 시·도별 현황

- 경기도, 가평군,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 4

## 광명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시행 2025. 11.14.] [경기도광명시조례 제3334호, 2025. 11. 14., 제정]

### □ 제정이유

- 노인에게 치명적인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공간의 복지용구 등을 지원함으로써 광명시 노인의 안전한 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 라. 지원신청 및 지원제외에 관한 규정

###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시·도별 현황

- 광주광역시, 성남시, 임실군, 천안시

# 5

##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시행 2025. 11. 17.]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조례 제2371호, 2025. 11. 17., 제정]

### □ 제정이유

- 급식종사자 중 폐암 확진이나 폐암 의심 소견을 받는 사례가 있어 급식실이 ‘죽음의 일터’로 거론되는 등 열악한 일터로 지목되고 있음.
- 급식실 운영은 시청근무자에게 있어 필수적인 사항으로 급식종사자와 직원들을 위해 급식실 환경조성 및 폐암검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시행계획(안 제4조)
- 다. 급식실 환경개선 및 공기질 관리(안 제5조~제6조)
- 라. 폐암검진 주기 및 지원(안 제7조~제8조)

###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 □ 시·도별 현황

- 대구광역시, 전주시, 전라남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6

## 진주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행 2025. 11. 17.]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2135호, 2025. 11. 17., 제정]

### □ 제정이유

- 2026년 경남도민연금 시행에 따라, 시민의 은퇴(60세) 후 공적연금 수령 전(65세)까지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안정된 노후 준비를 위해 진주시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도민연금 운영 및 재정 지원(안 제4조~제5조)
- 라. 정보제공 및 처리, 위임 및 위탁(안 제6조~제7조)

### □ 관계법령

- 「노후준비 지원법」,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시·도별 현황

- 경상남도, 진주시, 고성군, 거창군, 창녕군

---

##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

\* 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 1

도서관 이용자나 주민이 시립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특정 자료가 역사를 왜곡하는 자료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역사를 왜곡하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해당 자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료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25-0366] 경기도 군포시

## □ 질의요지

도서관 이용자나 주민이 시립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특정 자료가 역사를 왜곡하는 자료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역사를 왜곡하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해당 자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료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 의 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먼저, 질의요지와 같은 사무가 군포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서관법」 제45조제2항에서는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서는 도서관자료의 기준으로 인구 수 대비 갖추어야 하는 자료의 수량만을 규정하고 있어 도서관에 비치하는 자료의 내용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법령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에서는 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시립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대해 자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료를 폐기하는 사무는 군포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자료(이하 “역사왜곡자료”라 한다)란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안’(이하 “군포시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공적 절차를 통해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료 중 일제강점기 및 근·현대사의 사실을 왜곡·은폐·미화하여 시민의 역사 인식에 명백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도서관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해 간행물 결정 대상의 하나로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간행물’을 규정하고 있고, 출판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해간행물을 배포한 자에게 수거·폐기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직접 수거·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군포시조례안 제2조제3호의 역사왜곡자료와 출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유해간행물은 상당 부분 그 범위가 중첩될 소지가 있어 출판법에 따른 유해간행물 결정 및 수거·폐기 외에 별도로 조례에서 역사왜곡자료에 대한 심의와 그에 따른 처분을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의해 유해간행물로 결정되지 않은 도서관자료가 군포시조례안에 따라 역사왜곡자료로 판정되어 이용 제한이나 폐기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 유해간행물 제도에 대한 일반 주민의 이해에 혼란을 발생시킬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군포시조례안 제7조제10항에서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군포시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군포시 또는 공공도서관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립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특정 자료가 역사왜곡자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정보제공적 성격의 공표로 보이지만(각주: 법제처 『2024년 법령 입안·심사기준』, 2024, 522·523쪽 참조), 해당 공개를 통해 자료의 작성자 등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공개행위가 역사 분야에 대한 자유로운 저술 활동이나 출판 등을 사실상 제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7. 11. 의견제시 25-0192 참조).

그리고, 군포시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는 군포시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공공도서관 자료 선정 및 구입 기준의 수립·변경(제1호), 시민희망 도서의 구입의 적정성(제2호), 역사왜곡자료의 판정 및 관리 조치(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의사항은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 제3호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각주: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에 설치되는 위원회임)의 자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과 중복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군포시에 이미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상황에서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2

영월군수가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교통비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25-040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질의요지

가. 영월군수가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교통비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가 가능하다면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 의 견

가. 질의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참조).

먼저, 질의 가와 같은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영월군 소관 자치사무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복지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서 영월군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교통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 요지와 같은 참전명예수당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는 영월군 소관 자치사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질의 가와 같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따라서, 질의 가와 같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관련 판결 등을 참고하고, 유사한 수당을 중복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 운영의 형평성이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각주: 법제처 2012. 7. 25. 의견제시 12-0226 참조),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두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법령에서 허용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42조제1항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상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권한 행사를 견제·제한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영월군조례안”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영월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영월군수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영월군수에게 반드시 해당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영월군수의 권한을 침해할 정도의 견제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영월군조례안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영월군수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이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각주: 법제처 2017. 9. 22. 의견제시 17-0233 참조).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질의 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로서 입주민 및 일반 주민의 보행에 이용되는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용인시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의견25-0402] 경기도 용인시

#### □ 질의요지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로서 입주민 및 일반 주민의 보행에 이용되는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용인시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한 사업자가 공동주택단지와 연결된 외부 도로나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보행로·육교 등을 설치한 경우, 용인시장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그 보행로·육교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 의 견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단지(이하 “공동주택단지”라 한다) 내의 도로 또는 공동주택단지와 연결된 외부에 설치된 보행로·육교 등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의 보행에도 이용되는 도로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용인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집행 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제2호) 및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제4호마목)을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사무는 용인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로서 입주민 및 일반 주민의 보행에 이용되는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의 정의에 따르면 공동주택에는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중 하나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목)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내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한 사업자가 공동주택단지와 연결된 외부 도로나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보행로·

육교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그 보행로·육교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의 정의에 따르면 공동주택에는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이 포함되고, 그 부대시설에는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목),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나목),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다목)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주택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제1호),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제2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의 범위에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중 하나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목)는 포함되어 있지만, 주택단지와 연결된 외부의 보행로나 육교 등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외부의 보행로나 육교 등이 같은 호 다목의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한 사업자가 공동주택단지와 연결된 외부 도로나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보행로·육교 등에 대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그 보행로·육교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 귀 기관의 재정적 상황 및 해당 보행로·육교 등의 관리 비용 지원에 대한 주민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조례 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의 증설 없이 저장설비를 교체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25-0401] 경상남도 창원시

## □ 질의요지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의 증설 없이 저장설비를 교체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0)나)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새롭게 규정하면서, 그 조례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의 증설 없이 저장설비를 교체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 의 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습니다.  
(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법 제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6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관련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액화석유가스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시설의 증설 없이 저장설비를 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게 되면 액화석유가스법령에서 변경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액화석유가스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법 제5조제5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은 산업 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을 제5조제5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허가 취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정지·제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법 제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별표 4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별표 4 제1호가목10)나)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 목 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별표 4 제1호가목10)나)에 따라 같은 목 1)가) 및 아)에 따른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종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종전의 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강화된 시설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강화된 시설기준이 적용되는 시점과 강화된 시설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조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종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해 새로운 시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전의 시설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경우 그에 관한 경과조치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 시설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경과조치를 규정할지 여부와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종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신뢰 보호 필요성과 조례로 시설기준이 강화된 이후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귀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 IV. 국외 입법례

---

\* 출처: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

국회법률도서관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5-21호] (2025. 11. 11.)<sup>1)</sup>

- 우리나라는 사업주 및 경영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계속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법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 독일은 근로자의 안전을 규율하고자 1996년 제정된 일반법인 「산업안전보건법 (ArbSchG)」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BaustellV)」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1998년 동시행령의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급격히 줄었다. 독일에서 고용주는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과실일지라도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게 한 경우에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고 있다.
- 독일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중심적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보건 코디네이터 (SiGeKo)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고 후에는 사회보험을 통해 보상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법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고용주 모두 안전 확보의 의무가 있으며, 감독관을 파견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

■ 관련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주 제 어: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전예방, 안전보건코디네이터, 산업재해보험

1) 출처 국회법률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https://law.nanet.go.kr/foreignlaw/newForeignLawissue/list.do?isMenu=Y>

## 도입

- 독일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 ArbSchG)」<sup>1)</sup>에서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동법은 1992년에 발효된 유럽연합의 「건설현장지침(Richtlinie 92/57/EWG)」<sup>2)</sup>을 국내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Baustellenverordnung: BaustellV)」<sup>3)</sup>에서 실무적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실제로 1998년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 시행 이후에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현저히 줄었다.<sup>4)</sup> 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sup>5)</sup>
- 우리 정부는 올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사고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982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건설사업자의 사고대응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고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2020~2024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sup>6)</sup>
- 독일은 건설현장의 설계 및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을 고려해야 하고, 안전보건코디네이터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위험을 설계단계에서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는 산업재해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제도적으로 줄이기 위한 독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에서의 사고예방

### 1. 개요

- 독일연방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Bundesrat)의 동의를 받아 시행령을 통해, 사용자 및 그밖의 책임자가 취해야 할 조치와 동법에 기초한 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취해야 할 행동을 명시하고 있다.

1) 독일 연방법무부, <https://www.gesetze-im-internet.de/arbschg/ArbSchG.pdf>

2) 유럽연합 법령정보, <https://eur-lex.europa.eu/eli/dir/1992/57/oj/eng>

3) 독일 연방법무부, <https://www.gesetze-im-internet.de/baustellv/BaustellV.pdf>

4) 독일 연방노동보호청, <https://www.baua.de/DE/Angebote/Publikationen/Schriftenreihe/Forschungsberichte/2001/Fb936>

5) "독일, 산재발생·사망자수 급감...예방이 최선", KBS, 2020.12.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064053>

6) "5년간 10대건설사 근로자 113명 산업재해로 사망", 조선비즈, 2025. 9. 21.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09/21/PVLFBZBPABACDHTKAYNOSEZE2E/](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09/21/PVLFBZBPABACDHTKAYNOSEZE2E/)

-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은 건설현장<sup>7)</sup>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상당히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사전고지(Vorankündigung) 의무가 있으며 동시행령이 적용된다(제2조제2항제1문).

- ☑️ 작업 예상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20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근무하는 건설현장
- ☑️ 작업범위가 500인일(Personentage)<sup>8)</sup>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현장

**그림 1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의 주요내용<sup>9)</sup>**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해설)	건설현장의 개인보호장비	건설현장에서의 교통	유해물질
<b>원칙:</b> - 정해진 영역에서만 수행 (설정계획) - 적합한 노동자 채용 - 안전조치 모니터링 - 리프트 사용시, 안전장치 작용 - 건설감독관과 안전보건코디네이터에게 사고 및 위험상황 보고 - 차량 후진시 교육의무: 적재의 적합성	 헬멧 착용  안전화 착용  리프트  보안경  청력보호구	도로교통법시행령 적용  주차금지: 탈출 및 구조경로 비워두기  최대속도 제한 <b>술과 마약 금지!</b>	적절한 라벨이 부착된 물질만 사용 위험에 처한 근로자 구조 유해물질표시  !  
<b>작업에 적합한 보호조치 이행</b> 안전하고 검증된 작업장비 사용 (검사인증) 특히 위험한 작업(예. 용접)은 별도의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현장 고유장비 및 안전보건코디네이터의 조정	<b>특히 위험한 경우</b>  낙하위험  미끄러짐  레이저 빔  주의  적재금지  흡연금지		
<b>기타</b> 	필요한 허가(적절한 시간) 금지사항 및 지침 준수 승인된 비계(飛階)만 사용가능 / 전문가에 의한 작업 및 비계 안전성 검사를 요함	충분한 자격을 갖춘 계약업체 선정 통보	

7) 건설현장(Baustelle)이란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하나 이상의 구조물이 세워지거나, 변경되거나, 철거되는 관련 준비 및 최종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를 말한다. 또한 건설프로젝트(Bauvorhaben)란, 하나 이상의 구조물을 건설, 변경 또는 철거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제1조제3항).

8) 인일(Personenstunde)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수행하는 업무량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9) 독일 직업안전연구소, <https://www.arbeitsschutz-vogt.de/sigeko.html>

## 2. 건설프로젝트의 안전보건계획

- 건설프로젝트의 실행을 계획할 때 특히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수행할 작업을 분배하고, 이 작업의 수행 시간 책정 시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따른 일반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제2조제1항).

- ☑ 생명 및 육체적·심리적 건강에 대한 위험의 방지 및 현존하는 위험의 회피 및 최소화
- ☑ 위험의 근원 제거
- ☑ 최신기술, 산업의학 및 위생학과 학문상 확립된 이론을 고려한 조치 실행
- ☑ 기술, 근로 체계, 그 밖의 근로조건, 사회적 관계 및 작업장에 대한 환경영향이 적절히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 수립
- ☑ 개별 보호조치 후순위 실행
-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업집단에 대한 특수위험 고려
- ☑ 노동자에게 적절한 지시 전달
- ☑ 성별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다른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의 허용

- 동시행령 제4조에 따른 책임자는 적어도 <부록I><sup>10)</sup>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건설계획 사전 고지를 건설현장이 설치되기 2주 전에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계획을 건설 현장에 게시하고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제2조제2항제2문).
- 건설현장에서 <부록II><sup>11)</sup>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고용주는 건설현장이 설치되기 전에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해당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명시하고, <부록II>에 따른 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계획을 세울 때 현장의 운영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제2조제3항).

10) <부록I> 필수정보: 1. 건설현장의 위치, 2. 건축업자의 이름과 주소, 3. 건설프로젝트의 유형, 4. 고객을 담당하는 제3자의 이름과 주소, 5. 안전보건 코디네이터의 이름과 주소, 6. 작업의 예상 시작 시기 및 기간, 7. 건설현장의 예상 최대 직원 수, 8. 건설현장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 사업자인 고용주 및 계약자의 수, 9. 1인 사업자 및 계약자의 표시

11) 동시행령 제2조제3항의 의미에서 특히 위험한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5m 이상 깊이의 굴착 또는 도랑에 빠지거나, 7m 이상 높이에서 떨어지는 위험에 노출되는 작업
2. 직원들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노출되는 작업에서의 유해 물질 조려
  - a) 생물학적 제제 조려 제3조제1항의 의미에 따른 위험군 3 또는 4의 생물학적 제제
  - b)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의미 내의 위험 물질 및 혼합물
    - aa) 제1호(a)
    - bb) 제1호(f) 또는 제2호(a) (각각 범주 1 또는 2) 또는
    - cc) 제2호 e, f 또는 g(각각 범주 1A 또는 1B)
3. 방사선방호법 및 이를 근거로 발행된 법적 규정의 의미 내에서 통제 또는 모니터링 구역의 설립을 요구하는 이온화 방사선 작업
4. 고압선에서 5m 이내 거리에서 작업하는 경우
5. 직접적인 익사 위험이 있는 작업
6. 우물 건설, 지하 토공 및 터널 건설
7. 다이빙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8. 압축 공기에서의 작업
9. 폭발물이나 폭발 코드를 사용하는 작업
10. 중량으로 인해 동력 작업장비를 사용하여 하중을 들어올리거나 동력 작업장비를 사용하여 다른 방법으로 하중을 옮기는 경우, 견고한 건축 요소의 설치 또는 해체

### 3. 안전보건코디네이터(SiGeKo)

- 독일에서 안전보건코디네이터(Sicherheits-und Gesundheitskoordinator: SiGeKo)는 최신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조정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팀원들과의 지속적 교육과 전문성 개발을 통해 최신정보를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법률을 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특히 여러 근로자가 일하는 건설현장에는 1명 이상의 안전보건코디네이터를 임명해야 한다(제3조제1항). 안전보건코디네이터는 건설프로젝트 계획 및 실행 중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제3조제2항 및 제3항).

계획 중	실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및 개선</li> <li>☑ 안전보건 조정자로서의 검사</li> <li>☑ 건설현장규정, 안전보건계획(SiGe계획), 경보계획 등 중요 문서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따른 일반원칙의 적용 및 조정</li> <li>☑ 1인 사업자와 고용주의 의무 이행</li> <li>☑ 추가 조정에 따른 안전보건계획 수정</li> <li>☑ 다수의 고용주 간 협력 조직 구성</li> <li>☑ 고용주에 의한 작업 절차의 올바른 적용 감독 및 조정</li> </ul>

- 건축주(Bauherr)가 적합한 안전보건코디네이터를 임명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에서 면책되지는 아니한다(제3조제1a항).

### 4. 고용주의 작업안전 조치 의무

- 건설현장의 고용주(Arbeitgeber)는 작업을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작업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동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 안전보건 코디네이터의 지시 및 안전보건계획을 고려해야 한다(제5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장비의 유지보수</li> <li>☑ 작업자재 및 폐기물, 특히 유해물질의 보관 및 폐기에 대한 조치</li> <li>☑ 건설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의 수행 시간 조정</li> <li>☑ 1인 사업자와 계약자(Unternehmer) 간의 협력</li> <li>☑ 건설현장에서의 작업과 사전작업이 수행되는 현장 또는 인근 작업간의 상호 작용</li> <li>☑ 건설현장에서 &lt;부록 II&gt;에 따른 특히 위험한 작업수행(Besonders gefährliche Arbeiten)</li> </ul>
--

- 고용주는 근로자와 관련된 보호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형식과 언어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제5조제2항).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1인 사업자도 작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고용주에게도 적용된다(제6조).
- 고의나 과실로 다음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제1호<sup>12)</sup>에서 정의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본다(제7조제1항).

- ☑ 관할관청에 사전통고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히 제때에 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건설현장을 설치하기 전에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 동시행령의 제7조제1항에 언급된 고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게 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2호<sup>13)</sup>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제7조제2항).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지침과 가이드라인<sup>14)</sup>**

**1. 「사회보험공단(DGUV)규정」**

- 독일에서는 노사가 함께 구성하는 사회보험공단(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DGUV)<sup>15)</sup>의 「사회보험공단규정」은 「사회법전 제7권(SGB VIII)」 제15조에 따른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규정은 사업자와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며, 자영업자(특히,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 제6조에 따른 1인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 「사회보험공단규정」 중에서 “건설공사(101-038)”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란, 「규정 38」의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이 공사에는 상업용 및 비상업용 건설공사를 모두 포함한다(제1조제1항).
  - 동 규정은 사업자 및 노동자(피보험자)에게 적용된다. 독일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의 사업자 및 직원에게도 적용되며,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와 비상업적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물주에게도 적용된다(제1조제2항).

12) 제25조(과태료규정)  
 (1) 고의나 과실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른 자는 질서위반을 구성한다.  
 1. 특정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을 포함한,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에 따른 법규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13) 제26조(벌칙규정)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한 자는 최대 1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제2호a목(관련 법규명령 위반시 과태료규정)에 명시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행한 자  
 2. 제25조제1항제1호(관련 유립연합규정 위반시 과태료규정) 또는 제2호a목에 명시된 행위를 고의로 행하여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한 자

14)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보호조치(Arbeitsschutzmaßnahmen)란, 근로에 있어서 사고와 근로조건으로 인한 건강위험을 예방하는 조치와 인권적 조치를 말한다. 근로보호조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기준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5) 사회보험공단(DGUV)은 독일의 법정 산재보험(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제도를 총괄하는 기관연합체로서 “산업재해의 예방, 재활, 보상”이 핵심 임무이다.

- 건설공사에는 구조물의 제작, 조립, 유지보수, 개조, 해체 및 철거와 관련된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제2조제1항).
- 낙하가장자리란, 건설작업 중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자리를 뜻하며,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제2조제5항).

- ☑ 60° 이상 경사진 표면의 가장자리(예: 지붕 표면)
- ☑ 관통 방지 표면에서 관통 방지가 불가능한 표면으로의 전환부
- ☑ 경사각이 서로 다른 표면, 즉 최대 22.5° 경사진 표면에서 60° 이상 경사진 표면의 전환부
- ☑ 접선의 경사각이 60° 이상인 곡면의 가상선

- 계약자는 유능하고 권한을 부여받은 감독자가 건설현장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감독자는 건설작업 중 산업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규정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제3조제1항).
- 계약자는 안전하고 건전한 시설, 작업장비, 개인보호장비, 작업공정 및 작업자재만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 장비, 작업자재가 운영지침과 교육에 따라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제3조제5항).
- 특별한 안전 요건이 요구되는 조립, 해체 및 철거 작업의 경우, 계약자는 위험 평가에 근거하여, 이러한 작업의 안전한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서면지침(예: 조립지침, 철거지침)을 건설현장에 비치해야 한다(제4조).
- 계약자는 예상치 못한 시설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제6조제3항).
- 계약자는 건설현장의 교통을 위한 규정을 수립하고 교통 경로를 명확히 해야 한다(제7조제1항).

## 2. 「작업장안전규칙(ASR)」

- 독일연방의 건설현장안전보건위원회(ASGB)<sup>16)</sup>에서 만든 「작업장안전규칙(Arbeitsstättenregeln: ASR)」<sup>17)</sup>에서는 작업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신기술과 산업의학 및 학문적 연구 결과를 반영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 ASR A2. 1.(추락 및 낙하물에 대한 보호, 위험 지역)에서는 건설현장에서는 1m 이상의 추락 높이에 대해 난간을 이용한 추락 방지 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난간의 최소 높이는 1m로 정하고 있다. 평평한 지붕의 경우, 높이 3m 이상부터 추가적 안전조치를 한다(제5호).

16) 건설현장안전보건위원회(Ausschuss fü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auf Baustellen)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만들어진 독일연방의 위원회로서,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자문한다. 최신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규정을 제안하며, 건설현장의 안전 및 건강보호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에 대해 연방경제노동부에 제안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https://www.bfga.de/arbeitschutz-lexikon-von-a-bis-z/fachbegriffe-a-b/asgb-fachbegriff/>

17) 독일 연방노동보호청, <https://www.baua.de/DE/Angebote/Regelwerk/ASR/ASR>

- 건설프로젝트의 위험성 평가는 모든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며, 추락방지망 또는 개인보호장비도 포함된다(제4호).
- 낙하물보호장치(예: 보호지붕, 안전망)는 낙하물의 특성 및 예상 운동에너지에 따라 선택하고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제6호).

## 요약 및 결론

- 지금까지 독일에서 건설현장 안전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일은 관련 법령에서 규제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접근을 통해 사고 발생을 줄여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고 있다.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법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 첫째, 독일은 정부 주도의 규제만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노사가 절반씩 참여하는 사회보험공단(DGUV)에서 안전규정을 제정하여,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 둘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법령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규정과 규칙들에서 상세하게 사고예방과 노동보호조치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다. 즉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규율의 밀도가 치밀하다고 할 수 있다.
  - 셋째, 독일에서 건설현장 사고는 건설자, 소유주, 안전보건코디네이터까지 법적 책임을 진다. 따라서 관계인 모두는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독일의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 제7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고용주와 경영인에게 건설현장의 사고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여 재해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독일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실제로 사고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처벌의 강화보다는 예방중심의 법과 제도 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추천 자료

- 안성경, “독일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209호, 2022.11.22.
- Donato Muro, Niklas Rahlmey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auf der Baustelle, Ratgeber, 2023

- ◆ 입법정보는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국외 입법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문의】 입법정책담당관 ☎ 033-249-5709